

- 일용직의 작업에 대한 정확한 일지 기록등 소속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.
  -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해당지역 의원은 물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할 것.
- 3) 동사무소 소관(공통사항)
- 의무감과 책임의식으로 현장확인 행정에 임해주길 당부
  - 관리직의 일일결산 미흡
  - 건축물 멸실 신고시 정화조 청소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, 확인을 철저히 할 것.
  - 소규모사업 시공업자의 전문성 결여 및 기술부족등으로 공사후 주민불만이 있는 바, 사업자 선정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.
  - 소규모사업 예산중 대부분이 보안등 수리비로 지출되었고, 보수비 지출도 현장 확인 없이 작업지시서의 도장만으로 지급되고 있음. 예산지출의 적정을 기하도록 할 것.
  - 토목, 하수, 건설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업무처리를 과다하게 한 직원이 담당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신속하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구민을 위한 생활행정 방향으로 업무조정이 요구됨.

## 가) 아현3동

- 선통물천 복개공사장 주변 상품적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악취동 환경 공해가 심함. 이에 대한 대책 강구
- 아현동 645-6호 하수공사 및 도로 포장공사 감독이 불성실하여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.

## 나) 공덕2동

- 감사자료에 오자 탈자가 있고 담당 등을 잘 모르는 직원도 있음
- 동사무소 순찰일지 작성부실

## 다) 동교동

- 관리직의 일일결산 미흡
- 주정차 단속 체손처리대장의 사유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사유기

## 재 미적정

- 염화칼슘 현장비치가 안됨.
- 소규모사업비가 현재 55%가 집행되었는 바, 향후 정확한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할 것이며 동절기 추진에 따른 하자예방에 주력할 것.

## 라) 상암동

- 주차단속 스티커의 체손처리 및 대장관리 부실
- 순찰일지와 복명서와 일치하여야 하나 일치되지 않음.
- 무단방치차량 관리 철저

## 나. 建議事項

- 1) 각종공사에서 명예감독관에게 공사전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설명이 있도록 제도적 장치등을 방안을 강구 할 것.
- 2) 빗물펌프장 10개소 근무자 27명중 50%의 인원에 대한 비수기 활용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요망

## 다. 處理意見

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'97. 1. 20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, 건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, 수립,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

## 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6. 12. 12.

總務財務委員會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12월 7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12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제42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('96. 12. 12.) 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사회진흥과장 성 학
- 가. 개정이유

○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망원동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'93년에 조정한 관계로 사용료가 낮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테니스장을 운영 관리코자 함.

#### 나. 주요 개정골자

○ 평일 전용사용(체육경기)은 1면당 8,000원에서 10,000원으로 상향 조정

○ 체육경기 이외 행사의 전용사용은 80,000원에서 100,000원으로 상향 조정

○ 평일 개인(어른)사용료는 1면당 2시간 기준 3,400원에서 4,000원으로 상향 조정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
○ 동 개정조례(안)은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망원테니스장의 기본 전용사용요금은 체육경기는 8,000원에서 10,000원으로 체육이외 행사 사용료는 현행 80,000원에서 100,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평일 2시간 기준 개인연습사용료는 현행 1면당 3,400원에서 4,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임.

○ 망원동 테니스장은 동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'96년도에 수탁자가 부담한 위탁료는 540만 8천원이며 1월과 7월, 2회에 걸쳐 징수된 것으로 사료됨.

○ 서울시 각 자치구별 테니스장 운영실태를 보면, 13개 자치구중 종로구가 직영 계획에 있고 서대문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가 직영하고 있으며 미포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임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질의요지(유남렬 위원) : 구에서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?

○ 답변요지(성학 사회진흥과장) : 금년에 보수비로 2백만원 집행함

○ 질의요지(유남렬 위원) : 국민체육증진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동시에 구 수입도 증대할 방안을 검토했는지?

○ 답변요지(성학 사회진흥과장) :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.

○ 질의요지(이인구 위원) : 망원동 테니스장 이용자가 극히 적다고 보는 데, 테니스장 이용자는 월 평균 몇 명이나 되는지?

○ 답변요지(성학 사회진흥과장) : 평일은 40명, 공휴일을 포함한 토요일, 일요일은 약 100여명됨.

○ 질의요지(이인구 위원) : 이용자수가 그리 많지 않은 데, 테니스장 5개면을 2개면으로 줄이고 나머지면은 일반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구, 배구 코트시설등을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?

○ 답변요지(성학 사회진흥과장) : 검토하겠습니다.

○ 질의요지(정만직 위원) : 테니스장을 공개 입찰에 불리는 방법을 택해 구수입을 증대한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서민층이 이용할 시설 설치는 불가한지?

○ 답변요지(성학 사회진흥과장) : 테니스장 위탁은 구 수입 증대보다는 생활체육의 활성화 증진 차원입니다.

○ 질의요지(정만직 위원) : 생활체육 활성화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 테니스장 이용자는 일부 특정인을 위한 시설로 인식, 인근 망원동 주민은 부정적으로 보며 또한 우리구 재정의 열악성을 인식, 재정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?

○ 답변요지(성학 사회진흥과장) : 검토하겠습니다.

○ 질의요지(김충환 위원) : 테니스장으로 인해 망원동 인근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, 테니스장 이용자의 승용차 주차로 주민통행의 불편이 있으며, 우기철 수로를 막아 인근주택으로 배수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는 바, 주무파에서는 시설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인근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.

○ 답변요지(성학 사회진흥과장) : 알겠습니다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  
개정조례(안)

의안  
번호

146

제출년월일 : 1996. 12.  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망원동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'93년에 조정한 관계로 사용료가 낮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테니스장을 운영관리코자 함.

2. 주요개정골자

- 가. 평일 전용사용(체육경기)은 1면당 8,000원에서 10,000원으로 상향조정
- 나.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의 전용사용은 80,000원에서 100,000원으로 상향조정
- 다. 평일개인(어른)사용료는 1면당 2시간 기준 3,400원에서 4,000원으로 상향조정

3. 개정근거

○ 지방자치법(1995. 12. 29. 법률 제5069호)  
제127조 및 130조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수반여부 : 해당없음.

첨부 : 1.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 
증개정조례(안)

2. 신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별표 1>테니스장 기본전용사용료(평일주간 기준) 중 망원동 테니스장 체육경기란의 “면당 8,000원 기준, 5면 40,000원”을 “면당 10,000원 기준, 5면 50,000원”으로 하고 체육이외 행사란의 “80,000원”을 “100,000원”으로 한다.

<별표 2>테니스장개인연습사용료(평일 2시간 기준)중 사용료란의 “3,400원”을 “4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<별표 1> 테니스장 기본전용사용료 (평일주간 기준)			<별표 1> 테니스장 기본전용사용료 (평일주간 기준)		
구장별	체육경기	체육이외의 행 사	구장별	체육경기	체육이외의 행 사
망원동 테니스장	면당 8,000원 기준, 5면 40,000원	<u>80,000원</u>	망원동 테니스장	면당 10,000원 기준, 5면 50,000원	<u>100,000원</u>
(생략)			(현행과 같음)		

현 행			개 정 안		
<별표 2> 테니스장 개인연습사용료 (평일 2시간 기준)			<별표 2> 테니스장 개인연습사용료 (평일 2시간 기준)		
기 준	사용료	비 고	기 준	사용료	비 고
1면당	<u>3,400원</u>	(생략)	1면당	<u>4,000원</u>	(현행과 같음)